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택 20422769	전화: 480-1381	시행상 특별회계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구 청 장	시 장
수신처 보존기간	10년	건 립	
시행일자	88년 6월		
부 조 기 관	부 청 장 도시정비 주 택 과 장	협 조 기 관	문 서 봉 인
기안책임자	주택계장(영성화)	발 신 명 의	발 신 인
유 수 신 참 조	국 안 참 조	시 장 구 청 장	1988.7.6
세 목	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		1988.7.6
(제 1안) 내부결재 1.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력 주택조합 조합장 신문규 의 2 개 조합으로 부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 추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. 2. 승인 사항 가. 사업주체: 한국전력 주택조합 신문규 의 2개 조합 나. 위 석: 강동구 길동 332, 333-1, 323-6. 다. 규 모: 아파트 9층 2동 162세대 및 부대시설 루. 사업기간: 1988. 7 - 1989. 9.			

마. 내 역 : 평 역

(제 2안)

수신 강남구 삼성동 167 한남전북 (주)

한전 김동 주택조합 조합장 신 민규 외 2계 조합

제목 등 건

1. 귀하가 당시에 제출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 
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합니다.

2. 동 사업 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  
라 도시계획법, 건축법, 도로법, 하천법 등 관계규정의 이가 결정 승인음 판  
은 것으로 보니 관련법규에 의한 공사 감독을 받도록 하고, 각종 용량 검사  
및 준공검사등을 지정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라며, 건축및 대지조사 공사등의  
설계도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 하오니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의 완전을 기  
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승인 개요

구 분	규 모	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축연면적 (㎡)	건폐율	용적율	비고
	층수	동수						
아파트	9층	2동	162세대	6,987.8	1,744.99	16,848.63	24.99%	212.63%

첨부 1. 사업 계획 승인 내역 및 설계 도서 과 1 부.

2. 승인 조건 1 부.

3. 비산본진: 발령원 신고서 끝.

(제3안)

수신 서울특별시청

참조 주택기획과장

제목 민영주택 건설 사업 승인 결과 보고

1. 강동구 길동 332번지 외 2필지상 한국전력 주택종합조합 신분구 외 2개조합으로 부지 민영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 1. 민영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결과 보고서 및 내역서 1 부. 끝.

(제 4안)
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동건

1. 당구에 제출된 강동구 길동 332, 333-1, 323-6호 민영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하였기 통보 하(오)니 언부 수행에 관오 없(으시)기 바라며,

2. 동 사업 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, 건축법, 도로법, 하천법 등 관계규정의 허가 결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하니 송부 하는 설계도서(별첨)에 의거 관련 법령 및 규정에

2950

<p>따라 기초 및 중간검사는 물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함것이며, 사업</p>
<p>수행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(시)기 바람. (바랍니다).</p>
<p>첨부 1. 사업계획 승인 내역서 및 설계도서 각 1 부.</p>
<p>2. 승인 조건 등 1 부. 끝.</p>
<p>수신처: 도시정비, 건축, 공원복지, 청소, 산업, 환경, 토목, 수도농사과장.</p>
<p>세무1, 건설관리과장, 길2동장.</p>
<p>(계 5안)</p>
<p>수신 수신처참조</p>
<p>제목 등건</p>
<p>1.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민영주택 건설</p>
<p>사업 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 수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2. 승인 내역</p>
<p>가. 사업주 체: 한국전력 주택조합 조합장 신문규 외 2계 조합</p>
<p>나. 건설위치: 강동구 길동 332, 333-1, 323-6호</p>
<p>다. 건설규모: 아파트 9층 2동 162세대 및 부대시설</p>
<p>라. 사업기간: 1988. 7 - 1989. 9.</p>
<p>첨부 1.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내역 1 부.</p>
<p>2. 위치도 및 배치도 각 1 부. 끝.</p>

수신처: 강동경찰서장(보안과), 전호지하철장(일부과), 강동교육구청장

(관리과), 안무전역 강동지판장(배전과), 강동소방서장.

(제 6안)

수신 서울특별시청

참조 공보관

제목 시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 구분: 고시

나. 게재건명: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

다. 근 거: 주택건설 추진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 5항

첨부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 7안)

수신 서울특별시청

참조 시민과장

제목 시장 관인 납인

1. 주택건설 추진법 제 33조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

처리에 따른 공문시행 (승인서 통보시 관보 게재 의뢰시)을 위하여 시장관인

납인을 의뢰 합니다.

2952

첨부 1. 사업 계획 승인 및 통보서 각 1부. 끝.

수신 한양주택은행장

참조 진상실

제목 변경

1. 당구의 제출된 양동구 민통 332번지의 2필지상 한양진원주택

조합조합장, 신문규 외 2개조합으로 부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신청의

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필지과 같이 통보 하오니

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승인 내역 1부.

2. 조합 인가증 및 조합 명부 사본 각 1부. 끝.

주택건설  
대지조성

# 사업계획승인서

① 승인호

1	2)상 호	안건 김동 주택조합 외2개 조합	3)지 동	정 호	
2	4)대표자	조합장 신문구	5)영 소	위 제	강남구 삼성동 767
3	6)영 명	송 이 호	7)차	적	서울종합 서초 16
4	8)주 소	서초구 서초동 1316 - 5.6			
5	9)영 명		10)차	적	
6	11)주 소				
7	12)착 업	강동구 김동 332 333-7 323-6	13)용 지	도 역	강동구청상역 주차장지구 주정비지구
8	14)대지면적	15)건축면적	16)주택형별	17)규 모	18)사 업 비
9	사업내용	6,987.8	16,848.63	난독 인립 평형 아파트315' 162세대	2 동 6,545,000 천원
10	19)확 공	20)준 공	21)예 정	일 자	일 자
11	사업기간	88. 7.			

별 첨

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 
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.

198 8

## 서울특별시





11. 연원 민중기 적성, 즉 적공적 부임으로 해결한 것.

12. 도도전

12. 대체되는 도도(선정부분)는 대지조성 준공전까지(B=6, L=108, M  
가관구 개소 (비어감) 포장 개선하여 기부 책임한 곳(별첨도면 표시)

13. 기존도로는 권개방영역의 준공전까지 용도 배치하고 토지합병  
할 것. *선정되는 도로나 교차로 전차로  
남북*

14. 단지 전선 도도 부속용 권개는 협의하여 서울시 시설기준에  
맞도록 할 것이며, 공기도 단지 기존 보 적도가 싸손되지 않도록  
할 것.

15. 도시

15. 이수원 권개는 지양기판권 이수도 법액의 선 사항설치용 받을 것.

16. 부속지는 이수도과 권개: 통제 인식, 이수도 및 부속지는  
기부 책임 할 것.

17. 이수도과 권개(간지영역)의 권개는 이수지지는 임의심의사  
협의 도면과 권이 권개도도감 공공 이수도역 연결하고 연결  
부분의 권개를 설치한 것이며, 이수권 연결서 도도출하 복고미  
부도 될 것.

18. 점수농지

18. 규정된 용량의 점수(주요 점수소 3개면 3본)과 점수점  
가치의 정지(적지영역(점수 포함)를 설치하여 규수노복하고,  
3개면 안수 개는 권물 3개도 설치한수 있도록 개면엔 번째이  
안수 개 설치할 것.

19. 교정농지

19. 교정은 서울특별시 권공요역(교역)의 선 기준중 교목 식재는

그 1/3을 취재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수고 5<sup>천</sup> 이상이고, 수관쪽은 2.5<sup>천</sup> 이상으로 취재할것.

2. 이 개역소남부 취재는 즉번이부 또는 편번으로 하며, 고부중 100주 이상 수고 5<sup>천</sup> 이상으로 할것.

### 관공분서

27. 관공 부전법 제17조 1의 규정상 의한 비상분진(세론시설, 가담파동)을 철거하고 공가 취득 70일전까지 비상분진 발생원 신고를 할것.
28. 석관장 70만 100<sup>원</sup> 이상의 압송류 차량 및 발전기 송풍기, 변속기등을 철거할 때는 비출 석관 차량을 특할것.

### 기타

1. 본 역에서는 국립 수목원으로 서울 물범부영안 전역(배배, 증어) 등으로 북쪽소재된 임목과 방죽역지 안도목, 사후 관덕 감독역지 임목을 개할것.
2. 위 승인 조건의 위배를 지닌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승인 조건의 추가 또는 변경 할수 있으며, 공사중지를 명할수 있음.
3. 준공전까지 견주주(주변조합원)를 162명으로 명의 변경할것.